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거주환경과 주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 노부모와 자녀간의 거주형태의 실태 및 동향 -

A study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for aging society

- The condition of the liv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 and its trend -

임희경* · 今井 範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奈良女子大學 生活環境學部

Hikyung LIM · Noriko IMAI

Faculty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 Faculty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Nara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and its trend. Our main focus is on the residential condition and its type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korea which has already entered the aging socie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is paper finds that the residence type of the households with elderly people becomes multifarious, as in a two-generation household, a couple and their single child, a couple family, etc. (2) The parents living separately from their child/ren account for 63.3%, which is becoming predominant in the residence type of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those living with their child/ren take up merely 24.5%. Thus, we can infer that the number of the parents with the former type is on the increase. (3) The residence type in reality is different from the one intended by elderly people, so we can estimate future change in the residence type. (4) The residence type varies, as in living together with young family, living separately from young family, separation at a distance, etc. In conclusion, we need appropriate living programs for each various residence type between elderly people and their children.

Key Words : aging society, the elderly, type of residence

I .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아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80세에 가까운 평균수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동시에 출산율은 감소하여 2000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1%를 넘어서면서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인구고령화의 속도를 들 수 있다. 고령화율 7%의 단계에서 그 2배가 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의 14%에 이르기까지는 겨우 23년 후인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고령사회인 서구 여러

나라의 인구고령화속도를 살펴보면 프랑스가 114년, 스웨덴이 82년, 영국이 46년, 독일이 42년 그리고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일본의 경우도 7%에서 14%가 되기까지 24년이 소요되었으므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출생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가 자립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환경의 정비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일본 총무청, 1999), 60세이상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73.6%가 불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주택의 구조나 설비에 대해서도 78.4%가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1989년 고령자

* Corresponding author: Hikyung Lim
Tel: 062) 670-2280, Fax: 062) 670-2180
E-mail: hikyung@gwangju.ac.kr

보건복지부 10개년 전략(gold plan)과 5년 후의 1994년 신·고령자보건복지부 10개년전략(新 gold plan)의 추진으로 재택복지대책의 정비에 중점을 둔 사업결과, 재택복지와 시설복지를 일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거주환경의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자립하고자 하는 고령자를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개호고령자와 그 가족까지를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기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고령자가 1984년 53.2%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에는 39.1%, 2000년에는 29.9%로 저하되어(임종권, 1985; 이가옥, 1994; 이윤로, 2004 재인용), 전통적인 동거형태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부부만 또는 노인혼자서 생활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1984년 22.6%에서 1994년 41.0%, 2000년에는 44.9%를 차지하여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고령자만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임종권, 1985; 이가옥, 1994; 통계청, 2000). 이와 같은 배경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근대화의 영향을 들 수 있으며, 그 결과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가족구조가 붕괴되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고령자의 거주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김태현, 1994). 또한 고령자의 거주형태의 다양화와 더불어 고령자와 가족과의 부양관계에서도 장남에 국한되지 않고 장남이외의 자녀와의 동거 등 가족과의 관계도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령자를 둘러싸고 있는 거주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복지국가의 고령사회와 같이 고령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된 생활이 가능한 거주환경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환경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의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노부모와 성인 기혼자녀(김태현, 1994; 신효식·서병숙, 1994; 윤현숙, 2003; 전길양, 1993; 최정혜, 1992), 또는 손자녀와의 가족관계(박경란, 1994; 조병은·박의순, 1990)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노부모와 자녀의 동거와 별거를 중심으로 거주형태의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수이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의료, 생활실태, 주택계획과 노인시설 등의 노인복지관련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자의 거주형태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고령자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령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환경과 가족과의 거주관계를 살펴보고 노인거주환경의 실태 및 거주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노부모와 자녀의 거주형태에 초점을 두고 거주실태와 거주동향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고령자의 거주형태와 가족과의 관계, 주환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주환경 정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고령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남자 51.1세, 여자 53.7세였던 것이 2000년에는 남자 71.0세, 여자 78.6세에 달하였으며, 평균 연령 80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반면 출생률은 계속 감소되어 여성 1인당 출생률이 1980년 2.06명에서 2000년 1.42명까지 저하되었으며,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계속되어 질것으로 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이와 같이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로 인하여 1960년에는 국민전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 5%에 이르러 2000년에는 7.1%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장래의 노인인구증가추이를 보면 2020년에 13.2%,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있어서도 노인의 부양과 보호문제, 의료비용과 연금부담의 증가, 주택과 생활환경, 노인고용과 여가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로는 과거 전통적인 가족제도 아래에서는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책임이 맡겨져 자녀와의 동거로 부양과 보호를 받아왔으나, 산업화에 따른 학가족화, 출생률의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인부양은 가족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노인의 거주환경

부부에게서 자녀가 출생함에 따라서 결혼 가족속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게 된다. 森岡清美(1983)에 의하면 결혼가족은 남녀가 결혼하여 만들며 부부관계를 중심으

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족이다. 이어서 자녀가 성장 후 결혼하게 되면 짧은 세대에게서 또 하나의 결혼 가족이 생겨나게 되고, 이와 같이 구성되어지는 세대사이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세대관계가 형성되고 그 중에서 노부모와 자녀세대와의 거주관계에 관련된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어느 기혼자녀와도 원칙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기혼자녀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사람의 기혼자녀와만 동거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동거하는 기혼자녀를 원칙적으로 한사람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의 거주환경으로서 노인가구형태와 노인의 거주형태로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가구형태

노인이 속해있는 노인가족의 형태를 보면, 윤종주(1980)는 세대수, 고전적 가족형태의 개념, 가족의 주기적 변화의 3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노부부와 기혼자녀, 미혼자녀가 있는 2세대 복합가족, 노부부와 2명이상의 기혼자녀, 손자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3세대 복합가족, 노부부와 기혼자녀, 미혼자녀, 손자녀로 구성된 3세대 직계가족, 노부부만 있는 1세대 늙은 핵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장인엽·최성재(1987)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가족의 형태를 독신노인, 1세대노인 핵가족, 2세대노인 핵가족, 2세대 복합가족, 3세대 복합가족, 3세대직계가족으로 6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森岡清美(1983)은 노부모의 거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부부가족제(*conjugal family system*)로서 가족의 중추적 구성원은 부부로 제한된다. 부부에 의해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들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 곁을 떠나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노부모와 자녀는 별도의 생활단위를 구성하지만, 노부모가 어느 한쪽의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가족은 노동력의 지역이동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을 중시하는 사상과 평균수명의 연장화, 부부단위 중심의 생활을 고령후에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소득수준과 사회보장제도 등을 조건으로 들고 있다. 둘째로 직계가족제(*stem family system*)로서 가족의 중추적 구성원은 남편, 처, 대를 이어주는 자녀(아들)와 배우자, 손자, 노부모로 제한된다. 후계자이외의 자녀가족은 동거하더라도 장기간이 되지 않으며, 후계자는 별거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노부모와 동거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가족은 노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부양을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개개의 가족단독으로는 행복추구가 불리하지만, 이 유형의

가족이 우리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복합가족제(*joint family system*)로서 가족의 중추적구성원은 남편, 처, 복수의 기혼자녀와 배우자이다. 동거의 기혼자녀는 남자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인수의 가족을 형성시키지만, 부친 사망 후 자녀의 가족단위별로 분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동적이 되어지며 평균수명이 짧고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한 사회에서 형제간의 세대내부양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rensberg(1910-1997)은 이와 같은 가족유형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합가족제에서 직계가족제로 그 후 부부가족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 노인의 거주형태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거주형태는 전반적으로 기혼자녀와의 동거형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자녀와 별거하여 노인혼자 또는 노부부만으로 구성되는 노인단독세대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노인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연령, 결혼상태, 건강 등의 조건 외에 경제력, 교육력, 자녀수, 부양의식 등을 선행연구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박재간 외, 1996; 유성호, 1996; 이가옥 외, 1994).

대도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혼자녀와의 별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8년에는 15.9%(이가옥 외, 1989)에서 1994년에는 35.9%(이가옥 외, 1994), 2000년에는 44.9%(이윤로, 2004)를 차지하여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가족별거율의 증가는 가족동거비율의 감소로 추측할 수 있으나, 기혼자녀와의 동거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일본 총무청, 1995), 기혼자녀로서 아들과의 동거비율이 한국(37.5%) 일본(32.1%) 미국(1.1%) 독일(2.4%) 태국(26.2%)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동거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984년 53.2%(임종권, 1985)의 동거율이 10년 동안에 37.5%로 낮아져서 매우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혼자녀로서 딸과의 동거비율은 한국(3.6%) 일본(9.6%) 미국(2.5%) 독일(2.3%) 태국(36.1%)으로 나타나, 딸과의 동거도 노인거주형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거주형태로서 기혼자녀와의 동거비율은 감소되고 별거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기혼의 별거자녀 중 가장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와의 거리가 1시간이내의 경우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보면(일본 총무청, 1990),

미국(81%) 영국(79%) 독일(79%) 일본(68%) 한국(60%)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의 수정확대가족, 수정핵가족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국이 식지 않는 거리로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기혼자녀가 거주하는 비율은 미국(39%) 영국(37%) 독일(38%) 일본(24%) 한국(13%)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은 외국과 비교하여 기혼자녀와 근접한 거리의 거주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접촉빈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별거자녀 중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주 1회 이상에서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국(62%) 영국(66%) 독일(61%) 일본(32%) 한국(23%)으로 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일년에 몇 번 또는 한달에 1,2번의 중간 정도의 접촉빈도비율에서는 미국(31%) 영국(27%) 독일(37%) 일본(65%) 한국(75%)으로 순위가 가장 높게 차지하여 접촉하는 빈도가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부모와 기혼자녀가 별거의 거주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자녀와의 근거리거주비율이 매우 높으며, 접촉빈도 또한 높은 것을 특색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기혼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거주형태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접촉빈도 또한 낮아서 노부모부양기능에서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거주형태로서 별거가 증가하더라도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노인의 자립을 지원해 줄뿐만 아니라 원조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자녀의 정서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자녀로부터의 가사지원이나 신체적인 개호 등 노부모와 자녀관계는 상호원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거주노인에 있어서 매우 소수이지만 일부에서 근거리거주형태라고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노부모부양형태가 노인단독가구나 독신노인의 세대를 중심으로 찾아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자를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만 60세가 회갑으로 이때부터 노년기로 접어든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정년도 62-63

세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10.7%(통계청, 2000)이며, 조사 대상지역인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8.7%로서 약간 낮은 편이지만, 다른 대도시와는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300표를 배부하여 226표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부실기재 14표를 제외한 212표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기혼자녀와의 거주형태에 관한 사항, 장래의 거주지와 거주형태 지향, 주환경의 문제점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세대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세대의 일반적 사항

연 령	60~65세	36.8(77)	건 강 상 태	건강	45.1(94)
	65~69세	35.0(73)		약간 좋지 않음	39.4(82)
	70세이상	32.5(59)		좋지 않음	15.3(32)
가 족 형 태	삼세대동거	25.1(52)	주 택 면 적	25평 미만	19.0(38)
	미혼자녀와동거	25.1(52)		25~29평	13.0(26)
	노인부부만	30.9(64)		30~34평	22.5(45)
	노인혼자	10.1(21)		35~39평	4.5(9)
	기타	8.6(18)		40평 이상	41.0(82)
직 업	관리직	2.0(4)	배 우 자	유배우	71.4(148)
	전문기술직	3.3(7)		무배우	28.5(59)
	사무직	4.8(10)			
	판매서비스직	2.0(4)			
	기능직	2.0(4)	주 택 면 적	주	
	자영업	7.7(16)		단독주택	62.2(132)
	농업	14.0(29)		유 집 합 주 택	37.7(80)
	무직	56.3(116)			
	기타	7.7(16)			

* 결측값을 제외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음 단위: %(N)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SPSSWIN 10.0)을 이용하여 빈도(N),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카이제곱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노부모와 자녀간의 거주형태에 관한 사항

1) 자녀세대와의 거주형태

자녀세대(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혼의 자녀)와의 거주형태에 관한 사항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자녀세대와

<표 2> 노부모와 자녀간의 거주형태 단위: %(N)

동거		24.5(52)
N=63.3(134)	(隣居, 인거)	9.0(19)
	(近居, 근거)	7.1(15)
	(遠居, 원거)	26.4(56)
	(遠遠居, 원원거)	20.8(44)
기혼자녀 없음		9.4(20)
무응답		2.8(6)
합계		100(212)

의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먼저 동거와 별거로 나누었으며, 또한 별거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별거자녀와의 만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자녀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森岡(2000)의 분류를 참고로 시간적인 거리가 「걸어서 5분미만」의 경우를 「인거(隣居)」, 「걸어서 15분미만」의 경우를 「근거(近居)」, 「자동차로 20~30분미만」의 경우는 「원거(遠居)」, 「자동차로 30분이상」은 「원원거(遠遠居)」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현재의 거주형태를 동거와 별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세대중에서 24.5%가 노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우리나라의 3세대이상 가구비율의 전국적인 평균인 13.6%(통계청,2002)와 비교하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동거비율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60-64세에서는 21.4%에 불과하지만, 65-69세에서는 30.2%, 70세 이상에서는 36.7%를 차지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거비율 또한 높아져 연령에 따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세대는 6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자녀세대와의 시간적인 거리로 살펴본 결과, 「인거(隣居)」가 9.0%, 「근거(近居)」가 7.1%, 「원거(遠居)」의 경우가 26.9%, 「원원거(遠遠居)」가 21.2%로서 「원거(遠居)」와 「원원거(遠遠居)」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거(隣居)」와 「근거(近居)」의 거주형태도 소수이지만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걸어서 10분미만」의 인거비율이 대도시의 경우 6.2%와 「걸어서 10분~30분미만」의 근거비율이 9.1%를 차지하였으나, 근거리 거주지 선택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집합주택단지의 보급 등을 배경으로 본 연구결과에서는 거리상으로 매우 밀접한 인거가 근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노부모와 자녀세대와의 거주형태를 단순히 동거와 별거형태로 나누어 삼세대동거가족의 감소에 따른 노부모의 신체적, 정서적부양등이 문제시되고 있으나, 별

거의 유형중에서도 시간적인 거리상으로 다양한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노인혼자의 경우나 노인부부만의 가족형태로 생활하더라도 가까이에 별거자녀가 거주함으로서 일상적인 교류나 상호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直井道子(1993)에 따르면 이와 같은 거주형태를 일컬어 「떨어져 생활하여도 밀접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노부모세대와 기혼자녀세대가 근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친족, 근린, 사회적지원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적당히 균형 잡힌 거주관계는 고령자거주형태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주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노부모와 자녀동거세대에 관한 사항

① 노부모와 자녀동거세대의 현황

노부모와 자녀동거세대의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표 3>, 「노부부와 자녀부부」의 세대가 42.3%, 「노부와 자녀부부」세대가 7.6%, 「노모와 자녀부부」세대가 49.8%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는 편부모와 자녀부부로 구성되어진 세대가 약6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노부와 동거하는 세대는 소수인 반면에 노모와 동거하는 세대가 반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형태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001$), 부부가 전재한 동안에는 자녀세대와 별거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혼자가 되면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형태로 이행해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부모와 자녀세대와의 거주관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거하고 있는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표 3>에서 살펴본 결과, 「장남」이 61.5%, 「장남이외의 아들」이 19.1%를 차지하여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동거가 매우 높다는

<표 3> 가족구성에서 본 노부모와 자녀 동거세대의 현황

자녀	노부모와 자녀부부	부부+장남부부	30.8(16)
	42.3(22)	부부+장남 외의 아들부부	11.5(6)
동거	노부와 자녀부부	부+장남부부	3.8(2)
	7.6(4)	부+장남 외의 아들부부	1.9(1)
	7.6(4)	부+장녀부부	1.9(1)
세대	노모와 자녀부부	모+장남부부	30.7(16)
	49.8(26)	모+장남 외의 아들부부	5.7(3)
	49.8(26)	모+장녀부부	3.8(2)
	49.8(26)	모+장녀 외의 딸부부	9.6(5)

N=52, 단위: %(N) <무응답 제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녀, 혹은 장녀 이외의 딸과의 동거유형도 15.3%를 차지함으로서 동거대상이 되는 자녀가 아들중심에서 딸도 포함되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1995)의 결과에서는 딸과의 동거가 한국(3.6%), 일본(9.6%), 태국(36.1%)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자의 가족형태는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거주형태(동거·근거·원거)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보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②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거주공간

먼저 주택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집합주택이 39.3%, 단독주택이 58.9%를 차지하였다. 동거기간은 「3년 미만」이 15.3%, 「3~5년 미만」이 18.6%, 「5~10년 미만」이 27.1%, 「10년 이상」이 37.3%로서, 전체적으로 5년 이상의 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공간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같은 층에서 동거」가 87.9%와 「다른 층에서 동거」가 12.1%로 나타나, 대부분의 세대가 상하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엌을 제외한 방수는 3개의 경우가 36.0%, 4개의 경우가 37.4%이며, 평균적으로 3.9개(SD: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면적은 30평 이하가 32.0%, 30~39평이 27.0%, 40평 이상이 41.0%를 차지하였다.

한편 침실에서 배우자이외에 동침하는 가족의 유무에 대해서는, 36.5%가 동침하는 가족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가족관계로는 손자의 경우가 35.0%, 손녀의 경우가 60.0%로서 침실수의 부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령자와 손자녀와의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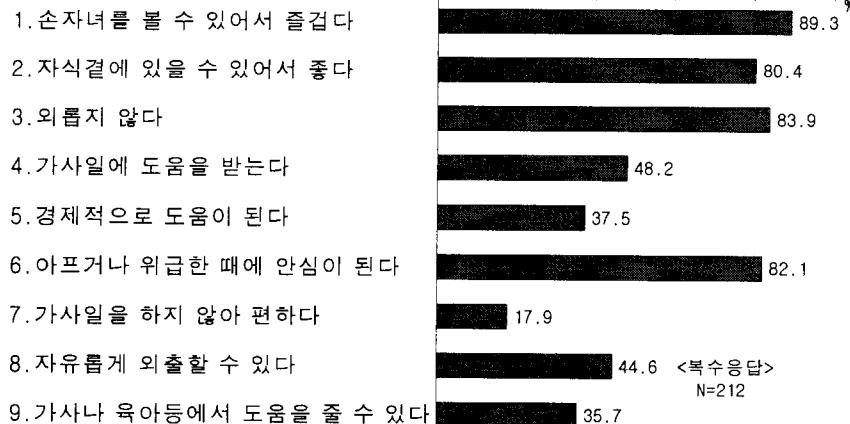
또한 노부모와 자녀세대의 생활형태로서 저녁식사행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항상 함께 한다」가 31.0%, 「자주 함께 한다」가 43.1%, 「때때로 함께 한다」가 25.9%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세대가 74.1%로서 동일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노부모자녀동거세대의 거주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저녁식사후의 가족단란행위(TV를 보거나, 대화와 같은 가족과의 모임)에 있어서는, 「항상 함께 한다」가 13.8%, 「자주 함께 한다」가 29.3%, 「때때로 함께 한다」가 56.9%로 나타났다. 저녁식사의 행위에 비해서 함께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노부모와 자녀동거세대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단란행위에 있어서는 과반수가 때때로 함께한다고 응답함으로서 독립된 주생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동거에 대한 의식

① 동거의 장점

동거의 장점에 대해서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다」가 89.3%,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다」가 80.4%를 차지하여, 손자녀와 자녀세대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장 큰 동거의 장점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롭지 않다」와 「아플 때나 사고에 대비해 안심이 된다」가 각각 83.9%와 82.1%를 차지하여 큰일을 당했을 때에 안심이 된다는 세대가



[그림 1] 동거에 대한 장점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동거에 따른 정신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점이나 가사부담의 경감등도 장점으로 들고 있음에 따라 자녀세대와 동거하고 있는 노부모세대가 자녀로부터 경제나 생활의 면에서 원조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외롭지 않다」의 항목에 있어서 「60~64세」에서는 77.8%인 것에 비하여, 「65~69세」에서는 84.2%, 「70세 이상」에서는 94.4%를 차지하여, 고령의 노부모세대일수록 정서적인 면에서의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가사나 육아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의 항목에서는 「60~64세」에서는 61.1%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에서는 31.6%, 「70세 이상」에서는 16.7%로 나타나($P<.05$), 연령이 낮은 부모세대 일수록 자녀세대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동거의 단점

동거의 단점에 대해서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스타일이 다르다」라는 항목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활시간의 차이」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 「손자녀에 대한 교육방법이 다르다」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여, 자녀세대와의 의식의 차이나 생활형태에서의 세대차이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친구나 친척과의 만남이 어렵다」 「친한 이웃이 적다」 「자유롭게 외출하기가 어렵다」 「혼자서 집을 지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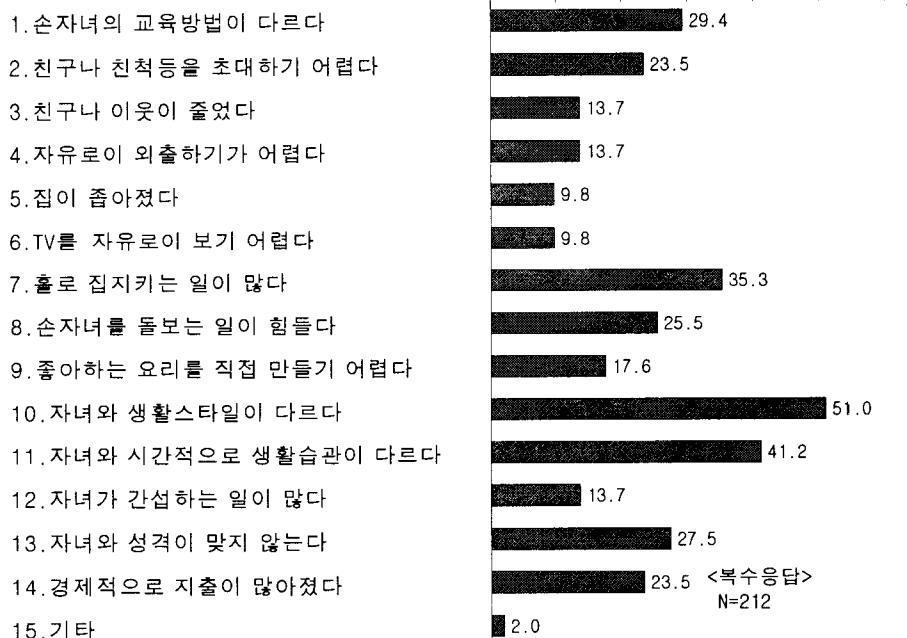
일이 많다」 등도 단점으로 들고 있으며, 자녀세대와의 동거에 의해 외부와의 사회적 교류나 행동영역이 좁아지는 노부모세대의 상황을 시사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노부모와 기혼자녀세대의 별거상황

표 4는 노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기혼자녀세대에 있어서 가족구성에 따른 자녀세대와의 거주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우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세대(37세대)에서는 「인거형」이 21.6%(8세대)와 「근거형」이 8.1%(3세대), 「원거형」이 45.9%(17세대)와 「원원거형」이 24.3%(9세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거형」과 「원원거형」이 많지만, 「인거형」도 일정 비율이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만」으로 구성되어진 세대(59세대)에서는 「인거형」이 5.1%(3세대)와 「근거형」이 13.6%(8세대), 「원거형」이 42.4%(25세대)와 「원원거형」이 39.0%(23세대)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노인혼자」로 구성된 세대(19세대)에서는 「인거형」이 15.8%(3세대)와 「근거형」이 15.8%(3세대), 「원거형」이 36.8%(7세대)와 「원원거형」이 31.6%(6세대)로 나타났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와 비교하여 「인거형」의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부세대보다는 노인 혼자인 경우에 자녀세대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상황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림 2] 동거에 대한 단점

<표 4> 가족구성에서 본 노부모와 자녀의 거주관계

가족구성	전체	隣居	近居	遠居	遠遠居
부부와미혼자녀	100(37)	21.8(8)	8.1(3)	45.9(17)	24.3(9)
노인부부만	100(59)	5.1(3)	13.6(8)	42.4(25)	39.0(23)
노인혼자	100(19)	15.8(3)	15.8(3)	36.8(7)	31.6(6)
기타	100(18)	27.8(5)	-	44.4(8)	27.8(5)
합계	100(133)	14.2(19)	11.2(14)	42.5(57)	32.1(43)

단위: %(N) <무응답 제외>

또한 거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거주관계로 볼 수 있는 「인거형」(19세대)과 「근거형」(15세대)에 대하여 노부모와 자녀세대와의 가족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거형」에서는 장남이 31.6%(6세대)와 장남이외의 아들이 15.8%(3세대), 장녀가 26.3%(5세대)와 장녀이외의 딸이 26.3%(5세대)로 나타났다. 한편 「근거형」에서는 장남이 26.7%(4세대)와 장남이외의 아들이 20.0%(3세대), 장녀가 40.0%(6세대)와 장녀이외의 딸이 13.3%(2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거형」과 「근거형」 모두 장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장남이외의 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별거형태를 취하면서도 거리상으로 장남과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남이외의 아들이나 딸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장남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자녀세대와의 관계도 밀접한 경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장남이나 아들만이 아니라 딸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남이나 아들을 중시하고 딸은 출가외인시하였던 역사적인 배경에 비추어보면 노부모와 자녀의 관계속에서 딸의 위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장래의 거주지와 거주성향

1) 노부모세대의 거주지성향

장래에 희망하는 거주지로서는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가 47.4%(100세대), 「자녀와 동거하거나 가까이에 살기위해서 언젠가는 이사할 수도 있다」가 19.4%(41세대), 「시내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공기 좋은 교외지역에서 살고 싶다」가 15.6%(33세대),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한 도시주변에서 살고 싶다」가 7.6%(16세대),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에 입주하고 싶다」가 4.3%(9세대), 「도시주변에 인접한 소도시에서 살고 싶다」가 2.8%(6세대)

대), 「교통이나 생활이 편리한 시내중심에서 살고 싶다」가 1.4%(3세대), 「농촌에서 살고 싶다」가 1.4%(3세대)로 나타났다.

현재의 거주지에 대한 정주의식은 전체적으로 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연령별로 「60~64세」에서는 38.9%, 「65~69세」에서는 53.8%, 「70세 이상」에서는 55.1%를 차지하여 연령이 높은 고령세대일수록 정주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고령세대의 경우(2001년, 内閣部, 고령자의 주택과 생활환경에 관한 의식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현주택의 희망이 57.7%, 자녀세대와 동거가 5.8%, 노인주거시설(공적, 민간시설포함)이 21.7% 등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현주택이나 노인주거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나 주거시설이 민간기업이나 종교재단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입주 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에서 31.7%(67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나 복지주거시설등도 고령세대의 주택계획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향하는 거주지의 지역별로는 시내중심을 선호하는 세대는 극히 소수이며 도시주변과 교외를 선호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고령자인 노부모세대의 거주지에 대한 정주의식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며, 주거환경이나 자녀세대와의 거주관계 등의 영향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노부모와 자녀세대와의 거주형태성향

① 거주형태의 성향

노부모와 기혼자녀와의 거주형태별로 나누어 「장래에 자녀와 어떠한 거주형태를 기대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현재 동거중인 24.5%(52세대)에 비하여 동거지향은 33.2%(70세대)로 나타나, 「별거→동거」에의 변동이 약 10%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별거를 지향하는 세대는 전체적으로 약 70%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별거를 지향하는 중에서도 거리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거」지향이 31.8%(67세대), 「근거」지향이 9.5%(20세대)와 「원거」지향이 12.8%(27세대)이며, 「거리에 관계없다」라고 응답한 세대가 12.7%(27세대)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의 거주형태로서는 「인거」가 9%에 불과하였으나, 「인거」지향은 31%를 차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별거를 지향하면서도 거주관계에 있어서는 거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형태를 지향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동거」「인거」「근거」를 합하여 소위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일상생활권」내에서의 거주 형태지향이 74.5%를 차지하여, 현재거주형태로서 「일상생활권」내의 경우(40.6%)와 비교한다면 1.8배로 증가하여 현재의 거주형태와 지향하는 거주형태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장래의 거주형태지향에 대해서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p<.01$) [그림 3], 특히 「동거」지향에 있어서 「60~64세」에서는 19.8%에 불과하지만, 「65~69세」에서는 39.1%이며, 「70세이상」에서는 51.0%가 동거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젊고 건강한 시기에는 자녀 세대와 별거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동거하는 거주 형태를 지향하는 고령자층의 거주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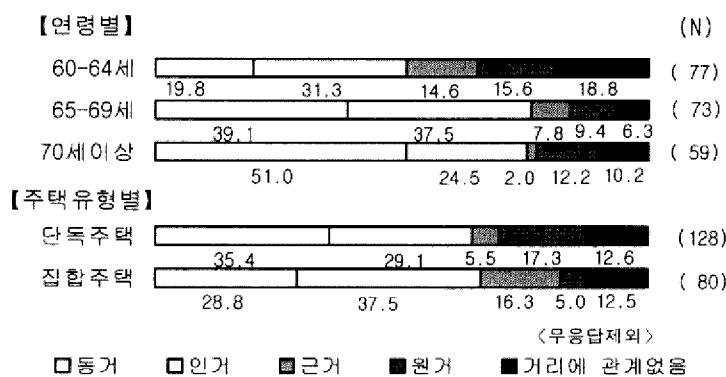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별로 거주성향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p<.05$), 우선 「동거」지향에 있어서 단독주택(128세대)에서는 35.4%(45세대), 집합주택(80세대)에서는 28.8%(23세대)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단독주택거주자의 동거지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거」와 「근거」지향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에서는 「인거」지향이 29.1%(37세대)와 「근거」지향이 5.5%(7세대)와 비교하여, 집합주택에서는 「인거」지향이 37.5%(30세대)와 「근거」지향이 16.3%(13세대)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합주택의 경우에는 현재의 거주형태로서 「인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주택보다 높았으며, 더불어 지향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별거하면서도 자녀세대와는 근접한 거주를 지향하는 세대가 집합주택거주에서 많았으며, 주택형태에 따른 거주형태의 지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집합주택에 있어서 노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인거폐어주택 근거폐어주택 등 근접거주형태로서 폐어주택(pair-house)공급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② 노부모와 자녀의 거주형태별로 살펴본 거주성향
노부모와 기혼자녀와의 동거·별거의 거주형태별로 나누어 거주성향에 대해서 살펴본 사항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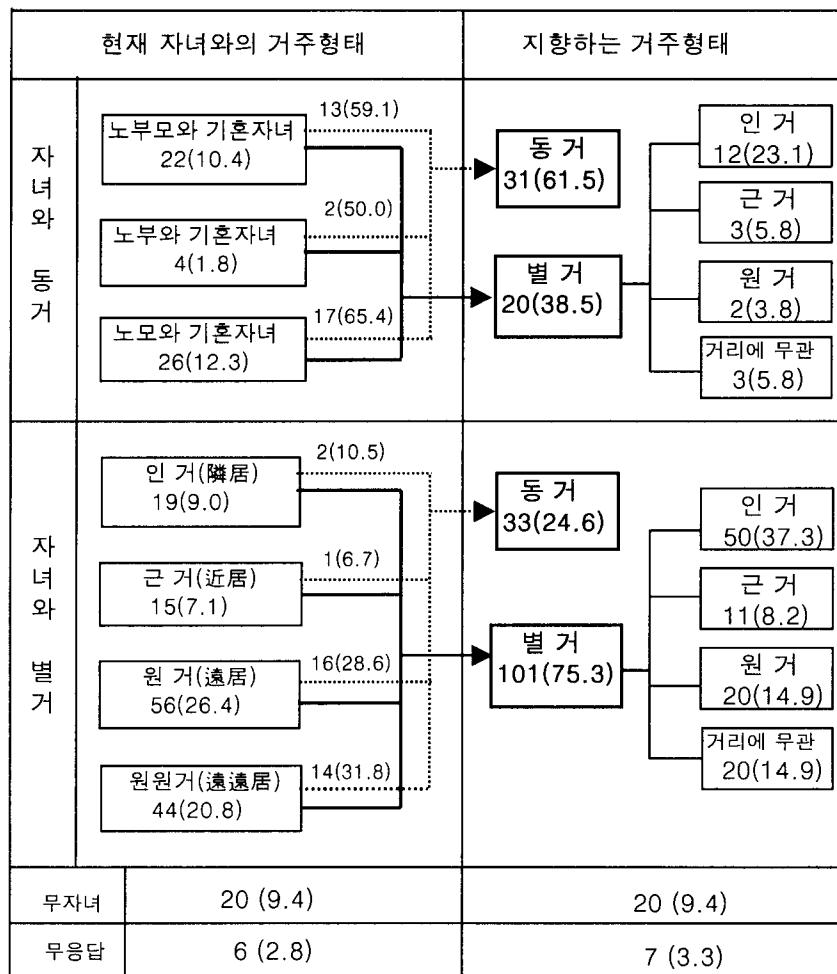
먼저 노부모와 기혼자녀가 동거하고 있는 세대(52/212)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거→동거」가 61.5%(31세대)였으며, 「동거→별거」는 38.5%를 차지하였다. 또한 별거지향 중에서도 「동거→인거」가 23.1%와 「동거→근거」가 5.8%, 「동거→원거」가 3.8%, 「동거→거리에 관계없음」가 5.8%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서 살펴보면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세대중에서 전체적으로 별거지향이 약 4할 정도 되지만, 「인거」지향이 가장 높게 차지하여, 별거는 하더라도 가능하면 거리상으로 매우 근접한 동거에 가까운 별거를 지향하는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세대와 별거하고 있는 노부모세대(134/212)에 대해서 거주성향을 살펴보면, 「별거→동거」가 24.6%(33세대)이며, 연령별로는 60~64세에서 21.2%, 65~69세에서는 42.4%, 70세이상에서는 33.3%가 동거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동거를 지향하는 세대중에서 현재의 거주형태가 「인거」와 「근거」를 합하여 9.1%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원거」와 「원원거」는 48.5%, 4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별거자녀세대와 거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세대중에서 동거를 지향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연령으로 별거자녀세대와 거리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세대중에서 동거지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거주형태로서 「인거」의 경우(19세대)에서는 「인거→인거」가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의 상황과 지향이 일치하고 있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수이지만 「인거→동거」가 10.5%(2세대)를 차지하였으나,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노인혼자(1세대)와 기타세대(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장래지향하는 거주형태 -연령별, 주택유형별-



[그림 4] 노부모와 자녀의 거주형태별로 살펴본 거주지향

한편, 현재의 거주형태가 「근거」의 경우(15세대)에서는 「근거→근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근거→인거」가 60.0%(9세대)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동거는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거리를 가깝게 하여 가족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부모세대의 의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거주형태로서 「원거」(56세대)와 「원원거」(44세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거→동거」가 28.6%(16세대)와 「원원거→동거」가 31.8%(14세대)를 차지하여, 동거지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거→원거」가 19.6%(11세대)와 「원거→거리에 관계없다」가 16.1%(9세대)와 「원원거→거리에 관계없다」가 11.4%(5세대)로 나타나, 자립성이 높은 노부모세대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장래의 노부모와 기혼자녀세대의 거주형태성향으로는 「동거→별거」, 「별거→동거」 등의

현대의 상황과 다른 거주지향을 나타냄으로서 거주형태의 변동이 예측되어진다. 또한 별거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세대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인거」라고 하는 노부모와 자녀가 거리상으로 근접한 거주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이같이 별거지향중에서도 「인거」, 「근거」, 「원거」, 「거리에 관계없다」 등 다양한 거주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령세대와 자녀세대와의 거주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세대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내에서 서로 다른 건물의 주택에서의 동거주택이나 층을 달리하는 동거주택을, 집합주택에서는 인접한 페어주택(pare-house)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원거나 거리에 관계없다고 하는 자립성이 높은 세대에 있어서는 노인전용주택이나 시설 등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령기에 있어서의 주택과 주환경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향하는 거주지로서 현재의 주택에 대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반수가까이 차지함에 따라서 고령세대가 처해있는 주환경의 문제점으로서 주택의 불편한 사항과 거주지에 대한 불만 등 주택과 주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주택의 문제점

① 현주택에 대한 불만, 불편한 사항

[그림 5]에 현주택에 대한 불만과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항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세대는 11.3%(24/212)로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고령 세대가 불만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거주주택에서의 구조적, 설비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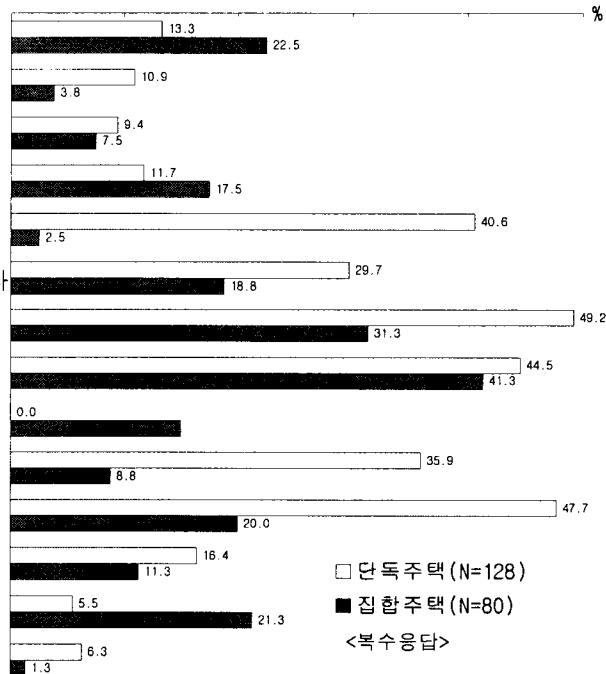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총무청, 1999), 60세이상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불편이나 불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3.6%를 차지하였으며, 주택의 구조나 설비에 대해서도 78.4%가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 우리나라로 노인들이 자신의 주택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주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생활행위의 불편함과 주택 구조에 따른 불편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생활 행위의 불편함으로는 「설비기기의 글자가 작아서 보기 어렵다」와 「전구나 형광등을 교체하기가 불편」이 각각 43.4%와 42.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의 구조로 인한 사항으로서 「목욕탕의 사용이 불편」이 36.3%와 「높은 곳의 수납장이 사용하기 곤란」이 26.4% 와 「화장실의 위치가 멀어서 불편」이 25.5%를 「현관의 조명이 어둡다」가 25.5%를 차지하여 주택과 관련된 사항이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로서 욕실과 화장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노인이 김익기 등(1999)의 조사 결과에서는 47%를 차지하였으며, 이꽃메 등(2001)의 연구에서는 31.4%로 나타난 결과와 공통점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만이나 불편한 사항은 주택유형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의 거주세대가 집합주택의 거주세대보다도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단독주택거주자의 불만이나 불편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화장실의 위치가 멀어서 불편」, 「높은 곳의 수납장이 사용하기 곤란」, 「현관의 조명이 어둡다」등의 사항에 있어서는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

1. 계단이 급하다
2. 계단에 손잡이가 없다
3. 단차가 많다
4. 바닥이 미끌어지기 쉽다
5. 화장실의 위치가 멀다
6. 높은곳의 수납장이 사용하기 어렵다
7. 전구나 형광등의 교체가 불편
8. 설비기기의 글자가 보기 어렵다
9. 엘리베이터의 사용이 불편
10. 현관의 조명이 어둡다
11. 목욕탕 사용이 불편
12. 정원 손질이 어렵다
13. 불만이나 불편이 없다
14. 기타



[그림 5] 현주택에 대한 불만, 불편한 사항

라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거주 고령세대의 주생활에 관한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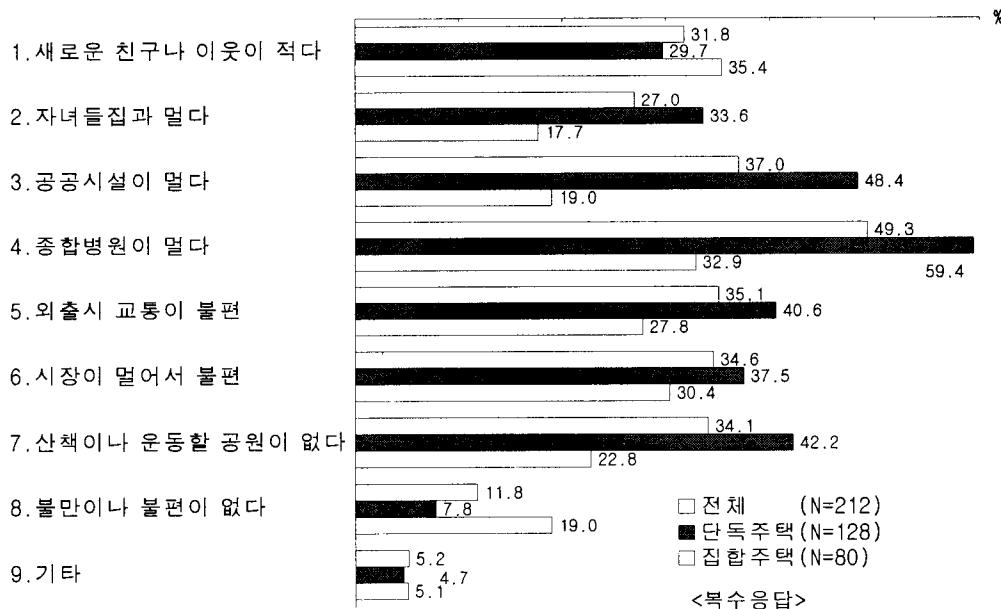
② 현주택내에서 개선한 사항

현재의 주택내에서 주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시킨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세대 29.7%(63세대, 복수응답)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부엌 개조」가 18사례, 「화장실 개조」가 17사례, 「목욕탕 바닥 교체」가 8사례, 「베란다 개조」가 6사례, 「보일러방식 교체」가 6사례, 「계단 개선」이 4사례, 「기타」가 9사례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일본 총무청, 1998), 주택에 있어서 고령자를 위한 설비공사상황으로 계단과 복도의 손잡이 설치가 40.8%, 욕내의 단차해소가 20.3%, 욕실과 화장실공사가 70.1%, 기타가 13.2%로서 욕실과 화장실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령자의 가정내 사고발생장소로서 계단(17.2%), 거실(16.9%), 부엌(12.4%)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경제기획청, 1994),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개선된 사례로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불만이나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과 개선시킨 점이 차이가 있음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정비로서 주택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된다.

2) 주환경의 문제점

현재의 거주지에 대한 불만과 불편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세대가 불만과 불편을 나타내었으며, 불만이나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세대는 11.8%에 불과하였다. 불만이나 불편한 사항으로는 「종합병원이 멀다」가 4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이 멀다」가 37.0%, 「외출시에 버스나 교통이 불편」가 35.1%, 「시장이 멀어서 장보기가 불편」가 34.6%, 「산책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없다」가 34.1%를 차지하였다. 또한 「친한 친구나 이웃이 적다」가 31.8%, 「자녀의 집과 멀다」가 27.0%로 나타났다. 이같이 병원이나 공공시설, 구매시설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의 불편함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이나 공원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나, 주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을 지적하고 있는 세대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그림 6], 집합주택의 거주세대보다도 단독주택거주세대가 전반적으로 불편이나 불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집합주택의 거주세대는 단독주택거주세대보다 불만이나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친한 친구나 이웃이 적다」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집합주택거주세대에 있어서 사회적인 교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거주지에 대한 불만, 불편한 사항

V.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거주환경중에서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거주 형태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의 거주형태의 현황과 그 동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고령세대의 거주형태는 삼세대가족이나 부부와 미혼자녀, 노부부만, 노인혼자 등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거주형태를 동거와 별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동거는 3할이 되지 않았으며, 별거하고 있는 고령자가 6할 이상을 차지하여 별거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부모와 별거세대에 있어서는 거리상으로 인거(隣居), 근거(近居), 원거(遠居), 원원거(遠遠居)등 거주관계에 따른 다양한 거주형태의 존재가 지적되었다. 노부모와 동거세대의 가족관계에서는 장남 또는 아들과의 동거가 변함없이 높았으나, 한편으로 딸과의 동거도 소수이지만 나타남으로써 동거상대의 선택사항이 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노부모와의 동거세대에서는 자녀세대와의 가족관계나 정서적인 면이 동거의 장점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자녀세대와의 의식의 차이나 생활형태의 차이 등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장래에 지향하는 거주지로서는 현재의 주택을 희망하는 세대가 반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거주지에 대한 정주의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주택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으로 고령기의 주거환경을 대비한 주택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재 고령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형태와 지향하는 거주형태에 차이가 나타남으로서 앞으로 거주형태의 변동이 예측되어지며, 전체적으로 동거, 인거(隣居), 근거(近居)를 총칭하여 일상생활권내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세대가 7할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자녀세대와의 밀접한 거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령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의 변화로서는 동거에서 별거로, 별거에서 동거로, 근거에서 인거로, 원거에서 인거로의 희망 등 다양한 형태이며, 이에 대응한 고령세대와 자녀세대와의 거주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자녀세대와의 별거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어짐에 따라 별거하면서도 거리상으로는 매우 인접한 거주형태를 지향하는 고령세대를 고려하여 인거나 근거를 위한 거주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자립정신이 높은 고령세대층을 위해서는 고령자전용주택이나 복지시설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거주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세대

를 한정으로 표집함으로써 고령세대에 대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세대의 거주환경과 노인복지를 위한 연구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성인자녀와의 동별거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세대에서 노부모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라고 하는 일원적인 노부모부양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고령화나 가족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앞으로의 다양한 고령자 거주형태를 고려해 볼 경우 고령자가족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령자를 주제로 한 고령자와 가족관계 등 다양한 고령자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속해있는 고령자가 아니라 서구사회에서처럼 개인으로서의 고령자를 연구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별거하여 지역 사회속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 고령자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다양한 세대관계와 친족, 근린 등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조건과 특징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고령화사회, 고령자, 거주형태

참 고 문 헌

- 신화용(1996). 1980년 이후의 노년기가족의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35-49.
- 이꽃메, 김운영, 김희결, 박은옥, 소애영, 전경자(2001). 쟁가 노인의 가정환경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179-190.
- 김의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 이연숙, 조성남 (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이가옥(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로(2004). 노인부양을 위한 가족의 보호노동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53-70.
-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
- 송규탁(1991).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1(2), 251-273.
- 日本 經濟企劃廳(1994). *國民生活白書*.
- 日本 内閣部(2001). *高齡社會白書*.

牧野 唯, 今井 範子(1998). 親子同居からみた居住形態の現
状と居住の継承に関する 調査研究 -奈良縣橿原市
今井町の場合-. 日本建築學計畫系論文報告集 No.
510, 117-124.

梁谷 俊子(2000). **老いと家族**. ミネルバ書房.
森岡 清美(2000). **新しい家族社會學**. 倍風館.

日本 厚生省(2000). **厚生白書**.
安達 正嗣(1999). **高齢期家族の社會學**. 世界思想社.

(2005. 03. 29 접수; 2005. 06. 01 채택)